##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18 발의연월일 : 2020. 12. 22.

발 의 자:이병훈·이상헌·양정숙

박 정・송갑석・윤관석

남인순 · 신영대 · 주철현

황운하 • 이수진비 • 이원택

도종환 · 김한정 · 김승원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려운 한자어인 "화상(畵像)"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"사진·영상"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,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## 뉴스통신 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제호(題號, 명칭)

제10조제2항제1호 중"화상(畵像)"을 "사진・영상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등록 등) ① 뉴스통신사업	제8조(등록 등) ①
을 하려는 자는 「전파법」에	
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	
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	
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	
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	
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	
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	
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	
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을	
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	
다.	
1. 제호(題號)	1. 제호(題號, 명칭)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지위 및 업무) ① (생 략)	제10조(지위 및 업무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연합뉴스사는 제1항의 지위	②
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하기	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	
당한다.	
1. 국가 등 공공기관, 국내외 언	1
론매체, 기업과 개인 등을 상	

대로 한 뉴스·데이터 및 <u>화</u> <u>상(畵像)</u> 등의 공급

2. ~ 8. (생 략)

③ (생 략)

\_\_\_\_\_\_<u>\</u>

<u>진·영상</u> -----

2. ~ 8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